**학습비 반환기준**

1)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6591호) <별표> 학습비 반환기준(제4조제2항관

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함.

|  |  |  |  |
| --- | --- | --- | --- |
| **구 분** |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1.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 된 금액 전액 |
| 2.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우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1.반환금은 학습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한다.  2. 학습자의 학습포기 의사 표시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습비를 반환한다.  3. 반환기일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이 끝나는 익일을 반환기간 만료일로 한다.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의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 |

**환불 신청서**

Fax) 02-3281-12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름 |  | | | 생년월일 | |  | |
| 환불신청과목 |  | | | | | | |
| 연락처 |  | | | | | | |
| 납부일자 | ※정확한 일자를 모를 경우 납부년월만 작성 | | | 납부금액 | | 원 | |
| 카드번호 | ※결제하신 카드의 카드명과 **뒷번호 4자리**  **예시) 국민카드 8891** | | |  | |  | |
| 환불 계좌번호 | ※현금으로 입금하신 경우에 작성 | | | 은행명/  예금주명 | | ※통장명의가 가족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 환불사유  (상세히기록) |  | | | | | | |
| 년 월 일  서 명 : (인)  (아래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 | | | | | |
| 수강학기 | | 환불내역 | | | | | |
|  | | 1개월 차 반환금 | | |  | | |
| 2개월 차 반환금 | | |  | | |
| 환불방법 | |
| 3개월 차 반환금 | | |  | | |
| □카드취소  □계좌이체  □기타 | |
| 나머지 일수 | | |  | | |
| 수수료 | | |  | | |
| 합계 | | |  | | |
| 비고 : | | | 결  재 | 담당 | | | 대표 |
|  | | |  |